| | |
|---|---|
| 의안번호 | 2200445 |
| 의 뢰 인 | 복기왕 의원 |
| 회 답 일 | 2024. 7. 15. |
| 추계번호 | 24C0815 |

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 Ⅰ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
|---|---|---|
| 1 | 안 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) | (제1항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**경로당 공동급식 및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**에 필요한 양곡 구입비 등 식자재구입비 및 부식구입비와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함<br>(제2항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**경로당의 취사용 연료비**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<br>※ (현행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|

# 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미첨부 근거 규정 |
|---|---|---|
| 1 | 안 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 2. 상세 사유

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공동급식 및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현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음

- 2024년 보건복지부의 경로당에 대한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예산은 800억원(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율 90%, 서울 3,425개소, 지방 65,031개소에 개소당 2,689천원 지원 반영)

- 경로당 급식지원인력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경로당에 방문하여 배식, 식권 검수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하거나(공익활동형), 그 외 행정 등의 지원 업무(사회서비스형)을 수행하는 사업으로, 2024년 4월 현재 6만 4,279명 지원 중

○ 시·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비 및 냉난방비 외에 부식비, 공공요금 등의 일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

- 보건복지부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, 2024년 기준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 예산총액은 1,690억원

❑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로당의 수와 필요 비용의 규모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규모 등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

○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1일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

- 보건복지부 보도자료[1]에 따르면, 2024년 5월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 대해 양곡비,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하여 주 5일 식사를 제공하고,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

○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2024년 4월 기준 전국의 경로당 6.9만개 중 5.9만개가 주당 평균 3.4일의 식사를 제공

1) 보건복지부(보도자료), “경로당에 중앙-지자체 협업으로 5월 1일부터 주 5일 식사제공”, 2025.5.1.

[표 1] 전국 경로당의 식사 제공 현황

(단위: 개소, %, 일)

| 시도 | 경로당 수 (A) | 식사 제공 중인 경로당 수(B) | B/A | 주 7일 중 평균 식사 제공횟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합계 | 68,658 | 58,558 | 85.3 | 3.4 |
| 서울 | 3,609 | 3,090 | 85.6 | 3.3 |
| 부산 | 2,403 | 2,152 | 89.6 | 3.3 |
| 대구 | 1,809 | 1,318 | 72.9 | 3.3 |
| 인천 | 1,555 | 1,341 | 86.2 | 3.7 |
| 광주 | 1,380 | 1,291 | 93.6 | 3.6 |
| 대전 | 850 | 814 | 95.8 | 3.0 |
| 울산 | 836 | 695 | 83.1 | 3.0 |
| 세종 | 517 | 498 | 96.3 | 3.2 |
| 경기 | 10,020 | 8,391 | 83.7 | 3.1 |
| 강원 | 3,319 | 2,443 | 73.6 | 3.2 |
| 충북 | 4,262 | 3,553 | 83.4 | 4.4 |
| 충남 | 5,924 | 5,414 | 91.4 | 2.9 |
| 전북 | 6,860 | 5,536 | 80.7 | 3.6 |
| 전남 | 9,211 | 8,166 | 88.7 | 3.6 |
| 경북 | 8,055 | 7,685 | 95.4 | 3.1 |
| 경남 | 7,575 | 5,929 | 78.3 | 3.8 |
| 제주 | 473 | 242 | 51.2 | 3.9 |

주: 2024년 4월 기준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로당의 운영비 및 부식비 지원액을 조사하였으나, 지역별 자료의 정확성이 낮아 추가재정 소요가 곤란

- 지방자치단체는 시·도비와 시·군·구비를 합하여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, 일부 지역에서는 운영비에 세부 항목이 나뉘어있지 않아 점심식사 제공 목적을 위한 비용(부식비, 취사연료비, 관련 인건비 등)과 그 외의 비용 구분이 모호함
- 이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경로당 1개소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식비 지원 합계액이 총 지원액을 상회하는 지역이 있는 등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낮아 추계에 활용하기 곤란

❑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# 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# Ⅳ. 작성자

❑ 성명
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|
|---|---|---|
| 사회비용추계과 | 김우림 | 이진우 |

❑ 대표연락처

| 성명 | 전화번호 | 이메일 주소 |
|---|---|---|
| 김우림 | 02-6788-3738 | wrkim@nabo.go.kr |